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38

발의연월일: 2022. 3. 31.

발 의 자:윤영덕·송갑석·신정훈

문진석 · 이동주 · 위성곤

민형배 • 조오섭 • 홍성국

이용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여 책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발행일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도서는 수요가 감소함에도 서점이 가격을 조정할 수 없어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고로 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이는 출판사의 권한이기에 서점의 도서 처리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된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출판된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매) ① ~ ⑥ (생 략)	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⑦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u> <신 설></u>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u> 간행물</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